

조합원의 징계 사유

2020년 11월 20일 조합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임○○(30바2248)조합원(중·동구 대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결과 임○○ 조합원은 대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진 자로서 조합 운영에 관하여 감사보고를 통하여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있으면서 악의적으로 다음과 같이 허위사실을 밴드에 수차례 유포하여 조합의 불신을 조장하고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조합발전을 저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처분을 “경고”로 결정하고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

허위사실	사실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5억을 탕진 ▶ 충전소복지보증금 10억을 옛장사 맘되로 빼와 현재 쌈지돈으로 다쓰고 ▶ 대의원회에 보고도 없이 옛장수 맘되로 복지기금 충전소계약금 10억을 작년애 빼와 쌈지돈으로 7~8억을 탕진 ▶ (현 이사장은 독단적으로 10억 배상 책임있음) 이사 대의원 회의도 없이 복지비 돈을 빼내와 마음되로 사용한 것은 과실! ▶ 복지비는 이사장들이 눈먼돈이라고 뭐아쓰고 ▶ 공제에서 몇백에서 몇천을 가져다 조합원이 아닌 이사장 개인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것 ▶ 현이사장이 10억을 찾아와 주머니 쌈지돈으로 거의 탕진 ▶ 어중이 떠중이들이 떼먹고 현이사장이 옛장사맘되로 작년봄에 10억 찾아와 쌈지돈으로 거의 탕진! ▶ 충전소 이사장 임의계약과 보증금 10억원 빼와서 이자놀이한다고하고 일년도 안도쌈지돈으로 7~8억 탕진 ▶ 조합원들의 대표가 연간 15억원을 탕진 ▶ 대의원들의 추인없이 조합장 마음되로 재계약 ▶ 지부장 사고처리 비용 평균 두당550만원의 사고처리수당을 받아가는것인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예산 15억은 이사·대의원에서 예산을 승인받아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음(감사가 확인하여 보고하였음) ▶ 조합은 충전소 재계약시 충전소 이자부담을 줄이기위해 E1과 협상을 통하여 2충전소 전세보증금을 15억에서 5억으로 낮추어 계약하고 복지기금 대여금10억을 회수하였습니다. ▶ 복지기금 지출은 복지규정에 의하여만 지출되고 이사장은 복지기금 지출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 조합은 조합 운영비에서 월급과 판공비, 직원월급 및 조합운영에 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대의원회 승인을 받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 복지충전소 재계약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대의원회에서 승인(2020년5월28일) 받은후 체결하였습니다. ▶ 공제사고 출동서비스 예산은 하청업체에 위탁비용 연간 약 1억3천만원을 지부장 출동으로 전환하여 연간 약 2,000만원을 절감하고 있으며 1인당 지급액은 약 월180만원이며 감사가 확인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

